

『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20일

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이 춘 배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관리·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사용허가 신청(안 제3조)
- 승마장 시설물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9~10조)
- 사용료의 감면 규정과 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(안 제13~14조)

- 휴장일 규정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회원제 운영근거(안 제20~21조)
-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4~26조)
- 승마장 시설 이용료와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)
- 말 사육농가와 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(안 제30조)
-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31조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시민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
-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승마장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게 하고
-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과 그 절차, 사용료와 감면 규정, 사용료 반환 기준, 사용자 책임규정 등을 명시하여 관리토록 하고
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회원제 운영 및 다양한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음
-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 될 때에는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을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등 승마장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는 새로운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축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말 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